

[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-109호]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62조 규정에 의거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3. 19

중소기업청장

『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』 개최요강

1. 개최목적

- 우수공예품을 발굴·시상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 우수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」 제62조 및 시행령 제54조(민속공예산업의 지원)

2. 전시행사

- 행사명 :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
(The 45th Korea Crafts Competition)
- 행사기간 : 2015. 9. 17(목) ~ 9. 20(일) / 4일간
- 행사장소 : 서울 삼성동 코엑스(COEX)

3. 개최기관

- 주최 : 중소기업청
- 주관 :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
- 후원 : 대한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진흥공단, KOTRA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, 한국종이접기협회, 한국수공예기능인협회, 한국공예연구소, 한국전통

염색협회

4. 개막식 및 전시일정

- 개막식 및 시상식
 - 일시 : 2015. 9. 17.(목) 10:30
- 입상작 전시
 - 기간 : 2015. 9. 17.(목) ~ 9. 20.(일) / 4일간

5.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 및 심사

가. 출품대상품목

-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,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
 - 출품분야 : 목·칠공예분야, 도자공예분야, 금속공예분야, 섬유공예분야, 종이공예분야, 기타공예분야
 - * 죽공예품은 목칠공예분야에, 귀금속보석공예품은 금속공예분야에 포함
 - ** 목칠분야, 도자분야, 금속분야, 섬유분야, 종이분야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분야에 해당 됨(예 : 석재, 초자, 초경, 모피, 골각 등 기타재료의 것은 기타공예분야에 포함됨)
- 출품제한 품목
 - ① 국내·외에서 이미 전시·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그 모방품
 - ②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
 - ③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이상 수상한 작품
 - ④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
 - ⑤ 미완성 작품이거나 끝마무리가 불량한 작품
 - ⑥ 미풍양속에 심히 저해되는 작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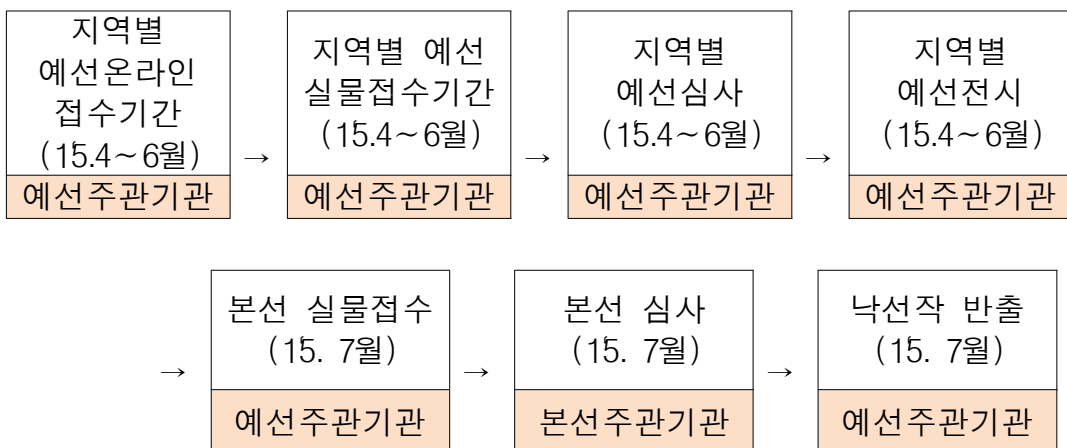
○ 출품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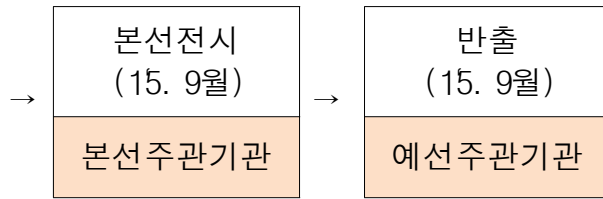
- ① 온라인(<http://www.crafts.or.kr>) 으로부터 접수받음
- ② 온라인(<http://www.crafts.or.kr>) 출품접수 시 작품 사진 file 을 반드시 업로드 하고 추후 예선 주관기관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작품을 제출함.(온라인에 입력된 정보는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임)
- ③ 작품 출품시 작품이외에 판넬 및 작품받침대(ex: 다이), 상품설명서 등은 접수받지 않음.
- ④ 작품가격이 50만원 이상 이거나 또는 변질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출품자와 예선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제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.
(포장 또는 안전장치 불량으로 변질, 파손된 경우 본선 주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)
- ⑤ 본선대회 특성상 작품 이송 및 진열중에 발생한 파손 및 변질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. 따라서 취급주의를 요하는 작품은 예선기관 담당자 및 본선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함
- ⑥ 출품작 접수 및 반출은 반드시 주관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품목록 및 수량을 확인한 후, 상호 확인서명을 하여야 함
- ⑦ 출품작이나 출품작 주변장치에 출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(성명, 호, 업체명, 낙관, 사인 등)이 있을 경우,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점요인으로 적용됨
- ⑧ 출품자격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에 한함
- ⑨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함
- ⑩ 1개 작품의 총 출품수량은 15점까지로 함
- ⑪ 디자인, 규격, 색상 등이 동일한 것은 3개 이내로 함
- ⑫ 수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시 감점요인으로 적용됨

- ⑬ 출품작이 2인 이상 공동 출품자일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상장과 부상을 지급
- ⑭ 출품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,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
- ⑮ 시상 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행위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출품을 금지함
- ⑯ 입상자는 시상 후 상품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
- ⑰ 본선 수상자중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의 작품 및 사진 자료의 저작권은 국고에 귀속되며, 주최 및 주관기관은 출품된 모든 작품을 촬영하여 인쇄물 및 기타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음
- ⑱ 출품작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하며,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는 한 개의 사업장 주소로만 출품이 가능함.

나. 출품절차

- 각 시·도 지역별 예선을 거쳐야 본선에 출품할 수 있음.
- ① 예선출품은 기업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지역, 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, 학생은 학교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출품함
- ② 신청은 홈페이지(<http://www.crafts.or.kr>)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함





○ 지역별 예선

- ① 지역별 예선은 각 시·도 단위로 자체계획에 의거 개최함
- ② 지역예선은 본선심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
- ③ 각 시·도는 지역예선대회 개최계획을 본선 주관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해당 지역 공예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추진함

○ 본선출품

- ① 각 시·도는 지역예선 출품작 중 본선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및 본선출품 수량에 의거 우수작품을 엄선하고 본선에 분야별로 구분하여 출품 접수시켜야 함
(지역 예선대회의 입선작 이상)
- ② 각 시·도는 별도로 통지한 일정에 따라 지정장소에 예선기관 담당자가 직접 접수시켜야 하며, 출품작 및 수량확인 후,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
- ③ 본선 출품작 접수시 시·도별 단체로 접수하여야 하며, 개별 접수는 받지 않음

다. 출품작의 심사

○ 지역별 예선

- ① 지역예선 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선대회의 출품분야 및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의 특성에 따름
- ② 지역예선 심사 및 전시일정은 각 시·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

③ 지역예선 심사시 중소기업청 및 주관기관 각 1인은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함

○ 본선심사

① 심사위원 : 업계, 학계, 전문가로 구성

② 접 수 : 2015. 7. 14(화)~7. 15(수) / 2일간

③ 심 사 : 2015. 7. 17(금)

④ 반 출 : 2015. 7. 20(월) / 1일간

○ 본선심사기준 및 방법

① 본선심사는 출품작에 대한 작품의 우수성, 상품성 및 디자인과 창의성을 중점사항으로 심사하되 아래의 기준에 의함

심사항목	배 점		고 려 사 항
품질수준	10	10	내구성 등 마감처리의 정교성
상 품 성	40	20	상품화 가능성, 가격의 적정성
		20	시장성, 대량판매가능성
디 자 인	30	10	기능성, 활용성 측면의 디자인
		10	심미성(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)
		10	혁신적 디자인(Global Design)
창 의 성	20	10	독창성, 창조성, 작품성
		10	신기술, 소재 융합 등
합계	100		

* 각 시□도는 심사항목별 배점을 상기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

* 동점일 경우에는 상품성이 우수한 작품을, 그 다음은 품질수준 및 지역별 특성이 강조된 작품을 우대

라. 공예품의 신제품개발 지원 및 상품화 추진

- ① 시·도(군)는 입상자에 대한 상품화 개발자금 및 해외선진공예품 견학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
- ② 시·도(군)는 필요한 경우 출품자를 위한 자금, 기술 및 디자인 부문 등의 종합지원 체제를 관계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강구하여야 함
- ③ 각 시·도(군) 및 후원기관의 장은 입상작의 상품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협력하여야 함

마. 출품작의 표시

- ① 출품작 온라인(<http://www.crafts.or.kr>)입력시 출품분야, 소속, 제작기간, 작품명, 용도, 출품자명, 출생연도,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의 '소비자 판매가격' 등 표기요망사항을 표시하여야 함
- ② 수상작품은 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가능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며, 판매 가능한 경우는 판매 희망가격을 표기하여야 함.

6. 시 상

가. 단체상

- ① 최우수상(1개 시·도) : 대통령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장 수여
- ② 우수상(2개 시·도)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장 수여
- ③ 장려상(3개 시·도) : 중소기업청장 상장 수여

* 대통령기는 차기시상식 전까지 반납하여야 하며, 3년 연속 수상시에는 해당 시□도에 귀속됨

나. 개인상

① 시상구분(예정)

(단위 : 만원)

시 상 명	수상자수	부상금
대통령상	1	1,500
국무총리상	2	각 400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	2	각 200
중소기업청 청장상	2	각 150
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상	1	100
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	1	100
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	1	100
KOTRA 사장상	1	100
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	1	100
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상	1	100
한국종이접기협회 회장상	1	100
한국수공예기능인협회 회장상	1	100
한국공예연구소 소장상	1	100
한국전통염색협회 회장상	1	100
장려상	50	-
특 선	70	-
입 선	100	-
합 계	237	

* 장려상, 특선, 입선작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*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은 주관기관에 귀속함

다. 시상요령

- ①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중소기업청장상 상장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, 후원기관의 상장과 부상은 각 해당기관에서 발급·시상함

라. 유공자 표창

- ① 지역별 예선 및 본선대회 개최를 위하여 공이 많은 관계자로서 시·도 및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
- ② 우리나라 공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

7.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 등 운영

가. 입상작 전시 및 판매알선

- ① 본선에서 입상한 품목을 전시하되, 전시작품 중 판매를 희망한 경우에는 현장판매를 알선
- ②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수상작을 선별하여 전시

나. 우수공예품 판매관 설치

- ① 동 대전 전시기간 중에 공예품의 마케팅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국내 우수공예품을 전시·판매하는 공예품오픈마켓을 설치 운영
- ② 판매장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수립하여 운영

다. 관련 부대행사

- ① 주관기관은 개막식, 시상식과 관련한 개막행사와 공예체험학습, 세미나 등 부대행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라. 출품작품의 반출

- ① 각 시·도는 본선에 출품된 작품을 본선 주관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자에 지역별 예선 주관기관 담당자 책임하에 반출하여야 함
- ② 반출기간내에 반출하지않아 발생한 분실, 변형, 파손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선주최 및 주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

8. 입상자 지원 및 특전

- ① 대한민국 공예 명품 인증마크 사용자격 부여(후원기관장상 이상)
- ②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공식홈페이지에 상품홍보(공예명품관)

- ③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상품판매 수의계약 추천
(후원기관장상 이상)
- ④ 백화점, 고속도로휴게소 및 기타 공예품판매장 입점 또는 판매전 지원
- ⑤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및 판로지원
- ⑥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을 통한 판로지원
- ⑦ 공공기관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우수수상작의 홍보 및 판로지원
- ⑧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주관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 우대
- ⑨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판로 및 홍보지원

9. 기타사항

가. 후원기관 및 협찬기관 협조사항

- ① 후원기관장상 입상자에 대한 상장 및 부상금 수여를 위하여 후원기관은 주관기관에 협조하여야 함.
- ② 협찬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음

나. 세부시행계획 수립

- ① 주관기관은 이 요강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은 각 시·도에 통보 하여야함
- ② 중소기업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 공고의 일정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

다. 종합결과 보고

- ① 주관기관은 대전 종료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